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4-03-21

대 법 원
제 2 부
판 결

2002. 5. 31. 판결선고	인
2002. 5. 31. 원본영수	

사 건 2002다4375 손해배상(기)

원고,상고인 1. A
2. B
3. C
4. D

피고,피상고인 대한민국

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2001. 12. 6. 선고 2001나25718 판결

주 문

각 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이 유

1. 제1주장(원고 A 관련)에 관하여.
원심은 원고 A가 투표를 마친 이상 투표과정에서 편의시설 미비로 불편을 겪었다거나 선거구위원 등으로부터 그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



사실관계에서는 그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함이 상당한 정신적인 손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.

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,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신적 손해나 선거권 보호 및 공무원의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.

상고이유의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2. 제2주장(원고 B 관련)에 관하여.

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, 원심이 원고 B, C, D가 투표를 하지 아니한 것이 해당 투표소의 위치 및 편의시설의 미비 때문이라는 그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, 거기에 경험칙 등의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인과관계 관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.

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제3주장(원고 C, D 관련)에 관하여.

원심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및 그 시행규칙에 거소투표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중증장애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거소투표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사전에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에게 대중들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홍보 또는 안내의 범위를 넘어 원고들과 같은 등록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거소투표의 요건 및 절차를 개별적으로 고지하거나 그 신청절차에 협조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.

관련 규정들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, 원심의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선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.



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론.

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
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.

2002. 5. 31.

재판장 대법관 강신욱 _____

주 심 대법관 조무제 _____

 대법관 유지담 _____

 대법관 손지열 _____